

#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

|            |    |
|------------|----|
| 의 안<br>번 호 | 21 |
|------------|----|

제출년월일 : 2022. 9. 6.  
제 출 자 : 평창군수

## 1. 제안이유

연도 중 보조내시 된 국·도비 보조사업 및 국·도비 집행잔액 반납금과 민선8기 출범에 따른 공약사업 및 현안사업, 호우피해 복구사업, 채무상환, 군민중심의 생활불편해소 등을 위한 최소한의 사업비만을 추가경정 예산으로 편성하려는 것임.

## 2. 주요골자

가.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728,709백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116,285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,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02,143백만원이 증액된 657,751백만원, 특별회계는 14,142백만원이 증액되어 70,958백만원 임.

### 나. 세입예산은

기정예산대비 일반회계가 세외수입 2,227백만원, 지방교부세 70,759백만원, 조정교부금등 373백만원, 국·도비보조금 14,441백만원,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14,343백만원이며, 특별회계는 세외수입 282백만원, 지방교부세 600백만원, 국·도비보조금 8,643백만원,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4,617백만원 임.

### 다. 세출예산은

일반회계 정책사업비 82,243백만원, 재무활동 18,504백만원, 행정운영경비 1,396백만원, 특별회계는 정책사업비 13,776백만원, 재무활동 364백만원, 행정운영경비 2백만원 임.

# 관계법령발췌서

## □ 지방자치법 제145조

-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으면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.
-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142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.

## □ 지방재정법 제45조

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(追加更正豫算)을 편성할 수 있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경비는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전에 사용할 수 있으며, 이는 같은 회계연도의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.

1. 시·도의 경우 국가로부터, 시·군 및 자치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·도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
2. 시·도의 경우 국가로부터, 시·군 및 자치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·도로부터 재난구호 및 복구와 관련하여 복구계획이 확정·통보된 경우 그 소요 경비